

공사 수의계약 공개서

□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(2010년 1월 - 수의계약①)

사 업 명	인천광역시 의회 용역원 대기실 설치공사				
계 약 개 요	계약일자	계약기간	예정가격 (또는 예정금액) (A)	계약금액 (B)	계약율(%) (B/A)
	2010.01.15	2010.01.15 ~2010.02.14	15,978,000	14,700,000원	92%
계약상대자	업 체 명	대 표 자	주 소		
	(주)굿하우스	오 장 연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-1 송도밀레니엄 607		
수 의 계 약 사유	○ 수의계약 사유 : 위 업체는 공공기관 시공에 다수 참여한 업체로 2009년 3월 의회 홍보관 리모델링 설치 공사 참여한 업체임.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장애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 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. ○ 수의계약 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가목(하자불분명) 및 제5호 (8천만원 이하 전문공사) /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 (2천만원 이하 공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) →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(행안부 예규 제178호 → 2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가능)				
사 업 내 용	○ 지하1층 용역원대기실(남, 여) 설치 - 바닥 설치공사, 벽체 마감공사, 천정 마감재 교체공사				
기 타	○ 허용면허 : 실내건축공사업				